

Subject: News Flash of III 3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제3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3차)가 런던 IMO 본부에서 2016년 7월 18일에서 22일까지 개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II 3차 주요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의제 5)

- 선박에너지효율관련 MARPOL 부속서 6장에 대한 2009 PSC 지침개정 (의제 3/5/3)
 - 개정 초안이 MARPOL 부속서 6장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MEPC로부터 해당 초안에 대한 추가 지시를 받아 PPR¹이 기술적인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 *Implications*

- ✓ **Shipowners** : 추후 PSC 시 수검 시, MARPOL Annex VI(에너지효율 관련) 개정사항이 반영된 PSC 지침서 검토할 것
- ✓ **Shipbuilders** : n/a
- ✓ **Manufacturers** : n/a
- SOLAS 협약의 조기사행에 관한 문제점 (의제 3/8/2 - PSC WG에서 논의)
 - 표제건 관련 아래 PSC 및 HSSC² 작업반에서 각각 개별 논의함.
 - PSC 작업반에서는 각 조기이행 회람서(circular)에 아래의 표준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합의함.

"IMO 사무총장은 모든 IMO 회원국들과 국제기구가 ___에 대한 협약

¹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² HSSC(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검사 및 증서 조화제도(Res.A.1053(27), as amended by Res.A.1104(28))

- 조기이행 내용을 가능한 널리 알리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IMO 사무총장은 SOLAS 당사국들이 협약조기이행에 관련된 SOLAS 규칙 내용을 당국 PSCO들에게 알리고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여야 한다.”
- IMO 각 회원국들은 관련 협약조기이행 내용을 당국 PSCO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동의함.

2. HSSC에 따른 검사지침 최신화 및 PSC 활동과 지침의 조화를 위한 조치 (의제 8)

- HSSC에 따른 검사지침 및 IMO 강제협약이행코드(III Code)의 협약상 의 무규정 목록 최신화에 관한 통신작업반 검토 보고서(의제 3/8)

1) *Polar Code*³ 요건의 HSSC 검사지침 반영 검토

- Polar Code의 HSSC 검사지침 반영을 위한 초안작업을 완료하고 MEPC 70차 및 MSC 97차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 단, POLAR Code(Part II) 중 해양오염에 관한 검사지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III 4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Implications*

- ✓ *Shipowners* : Polar 지역 운항 선박의 경우, 동 협약 요건과 관련된 HSSC 검사지침 및 증서발행 지침서 검토할 것
- ✓ *Shipbuilders* : n/a
- ✓ *Manufacturers* : n/a

2) 협약증서 “만료일”에 대한 통일해석 검토

- III 2차에서 “협약증서의 만료일을 설정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적용에 따라 상이함”에 따른 PSC 지적문제에 대해 논의함(IACS)

³ Polar Code: 극지운항선박 안전코드(MSC 94, MEPC 68차에서 채택. 2017.1.1. 발효) / POLAR Code는 선박안전에 관한 규칙(Part I/SOLAS)과 해양오염에 관한(Part II/MARPOL)로 나뉨.

- 증서 발행일로부터 5년 뒤 -1일을 만료일로 정하는 선급 : 9개 (KR 포함)
- 증서 발행일로부터 5년 뒤 당일을 만료일로 정하는 선급 : 3개 (RINA, DNV-GL)
- 상기 두 가지(안) 모두 가능한 것으로 결정됨.
- 제출된 통일해석에 관한 회람문서는 승인을 위해 MEPC 70, MSC 97차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Implications*

- ✓ **Shipowners** : 증서 만료일 관련 PSC 지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PSC 수검 시 관련 내용 숙지 필요함.
- ✓ **Shipbuilders** : n/a
- ✓ **Manufacturers** : n/a

3) *IGF Code* 관련 검사지침 HSSC 검사지침에 반영

- IGF Code 요건의 HSSC 검사지침 반영을 위한 초안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논의 시간부족으로 추후 지속적으로 상세 검사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함.

◆ *Implications*

- ✓ **Shipowners** : Gas Fuel 적용 선박의 경우, 동 협약 요건과 관련된 HSSC 검사지침 및 증서발행 지침서 검토할 것.
- ✓ **Shipbuilders** : n/a
- ✓ **Manufacturers** : n/a

4) “비자향 무인바지선의 MARPOL I, IV, VI 협약증서 면제”

- 비자향 무인 바지선의 MARPOL 협약적용 면제를 위한 MEPC 69차 결정사항(MARPOL 부속서 및 지침서 개정안)의 검토
- MEPC 69차의 결정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승인을 위해 III 3차 회의 결정사항을 MEPC 70차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MEPC 69차 결정사항]

- * 어떠한 면제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면제증서는 MARPOL 협약의 개별 부속서 별로 발행되어야 함;
- * MARPOL Annex IV 또한 검사 및 증서발급 요건의 면제에 포함되어야 함;
- * 기름기록부에 관한 MARPOL Annex I의 17.1 규칙사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함;
- * 지침서가 승인되고 나면, 이는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III 3차 결정사항]

- * **상기 MEPC 결정사항은 지지함.**
- * MARPOL Annex I, IV, VI의 개별 면제증서 상세문구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함.
- * UNSP Barge 정의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함.

○ SOLAS 협약 개정안의 조기시행에 관한 문제점 지적(의제 3/8/2)

- 1) SOLAS 협약개정안의 4년 주기 발효⁴에 따라 관련 회람서 발행 요청이 급증* 하는 추세이며, 협약 개정안 조기이행을 위한 회람서 발행 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난 5년간 5건의 동 회람서 발행. 반면, MSC 96에서만 4건의 회람서 발행 승인요청 문서 제출됨).

- "조기이행에 관한 회람서(Circular)"의 성격상 법적 강제성과 근거 부족
- 회람서(Circular)에 대한 기국과 항만국 간 인정 여부의 불일치로 인한 PSC 문제

- 2) 회원국들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MSC 97차에서 추가논의를 요청하기로 함

- ◆ III 3차 결정사항은 없으나, 동 주제와 관련해 상기 열거된 문제점으로 차기 MSC 97차에서 회원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추후 MSC 97차 논의결과에 주목할 것.

⁴ MSC.1/Circ.1481 참조

○ “Examining” 정의에 대한 검토의견(의제 3/8/3)

- HSSC 검사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검사(examining)”에 대한 정의가 HSSC 3.9.1항에 설명되어있음. 그러나, “정밀(thorough)”에 대한 용어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지침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함. 이에 해당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IACS에서 제시함.
- HSSC 검사지침 3.9.1항에서 “정밀(thorough)”, “선박의 시스템, 구성, 장비들 상태(condition), 접근성 (accessibility)” 표현을 삭제하기로 결정함.

[기존 HSSC 3.9.3항 “검사(examining)”의 정의]

* 계획서 및 구조를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사용되는 검사(examining)의 의미는 선박의 시스템, 구성품, 기기, 장비 등이 어떠한 결함, 손상 없이 적절한 상태로 작동되는지를 정밀검사(thorough examination)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지침서가 승인되고 나면, 이는 회람문서(Circular) 형태로 발행되어야 함

[III 회의 결과]

* 계획서 및 구조를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사용되는 검사(examining)의 의미는 선박의 시스템, 구성품, 기기, 장비 등이 어떠한 결함, 손상 없이 적절한 상태로 작동되는지를 **정밀검사(thorough examination)**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검사원은 **선박의 시스템, 구성, 장비들의 상태(condition), 접근성(accessibility) 및** 검사종류(최초/연차/중간/갱신)를 고려하여 검사의 범위/정도를 결정해야 함”

* 괄호() 내용은 IACS 제안문서에 포함된 내용

○ 새로운 규정 목록 (III 3/8/1, III3/INF.7, III3/INF.7/Add.1, 사무국)

- MEPC 68, MSC 95, A 29에서 채택된 사항의 HSSC 검사지침 반영에 대해 추후 III 4차 추가 논의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는 협약개정 사항을 HSSC 검사지침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 동 개정된 검사지침은 채택을 위해 A 30차 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단, 4년 주기 발효에 따라 채택된 SOLAS 개정사항 및 IMO 강제협약의 경우, 추후 통신작업반 개선을 통해 별도의 관련 HSSC 검사지침 개정안을 개발

하는 것에 동의함.

3. III Code의 협약상 의무규정 목록 (의제 9)

- III 4차 회의 및 통신작업반 개선을 통해 2018년 7월 1일 이후 발효되는 유효한 협약 개정사항을 포함하는 의무규정 목록 개정안을 작성하여, 동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 제30차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단, 4년 주기 발효에 따라 채택된 SOLAS 개정사항 및 IMO 강제협약의 경우, 추후 통신작업반 개선을 통해 별도의 의무규정 목록(안)을 개발하기로 함.



P.I.C:

Kim Jung-sub / Deputy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2

Fax: +82 70 8799 831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